영등포구의회 제213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안』

檢討報告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9. 3. 22.

行政委員會 專門委員 崔光黙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안』

檢討報告書

1. 경 과

의안 제91호로 2019년 3월 14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3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우리구 주민자치회의 설치, 구성 및 운영, 자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규정(안 제1조~제2조)
- 나.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기능, 정원에 관한 사항 규정 (안 제3조~제5조)
- 다.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, 선정 및 위촉, 임기 등에 관한 사항 규정 (안 제6조~제12조)
- 라. 주민자치회의 회의 운영 및 주민총회 개최에 대한 사항 규정 (안 제13조~제20조)

- 바. 주민자치회 운영계획, 동 행정사무 협의 계획 등을 포함한 자치계획 수립·결정·효력에 대한 사항 규정 (안 제21조~제23조)
- 사. 구청장의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및 협력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규정(안 제24조~제25조)
- 아.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등 규정 (안 부칙 제1조~제3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 나. 예산조치: 2019년 시비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 다. 혐의사항
 - 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 - 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원안동의라. 입법예고(2019.2.14.~3.6. / 20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 제27조, 제29조에 따라 서울시가 추진하는 주민자치회 시범시업 2차 시범구로 영등포구가 선정됨에 따라, 주민자치회 설치근거 및 운영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, 총 28개의 조무과 3개의 부칙으로 구성됨

- O 제정안의 주요내용은.
 -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,
 -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설치와 기능,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,
 - 안 제6조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주민자치위원 추첨관리를 위한 "위원선정 관리위원회"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.
 -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에서는 위원의 자격, 임기, 임무, 위·해촉 등 주민자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.
 - 안 제13조부터 안 제20조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, 운영원칙과 자치회장, 감사, 간사 선출, 분과위원회의 구성, 주민총회 등 주민참여폭의 확대를 위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.
 - 안 제21조부터 안 제23조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자치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 - 안 제24조부터 안 제25조에서는 주민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과 지원조직 운영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으며,

- 안 제26조부터 안 제28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위탁사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감독, 단체보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,
- 경과조치로, 이 조례에 의한 주민자치회의 구성으로, 기존 주민<u>자치위원회</u>는 **폐지** 된 것으로 보며, 새로이 구성되는 주민<u>자치회</u>는 기존 주민<u>자치위원회</u>의 재산 등을 **승계**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

○ 검토결과.

- 본 제정 조례안은, 풀뿌리 생활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새로이 법적 제도를 마런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, 입법취지와 조례안 내용은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, 과 「지방자치법」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되며,
- 2021. 5월까지 5개동이 시범 운영할 경우, 시행에 앞서 기존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폐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, 시범사업이 종료된 이후 구 재정과 인력부담 요인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참 고 자 료

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

- 제27조(주민자치회의 설치)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 양을 위하여 읍·면·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 회를 둘 수 있다.
- 제28조(주민자치회의 기능) ①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,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.
-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1.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
- 2.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
- 3. 그 밖에 관계 법령,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
- **제29조(주민자치회의 구성 등)**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, 구성,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-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이를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11.19., 2017.7.26.>

영등포구의회 제213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討報告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9. 3. 22.

行政委員會 專門委員 崔光黙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』

檢討報告書

1. 경 과

의안 제92호로 2019년 3월 14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3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확대와 같은 변화된 사회 여건을 반영하여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대상을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대상 정비

○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기준 단서 조항 신설을 통해 프로그램 수강생 증대로 인한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도모(별표2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8조

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
다. 입법예고(2019. 2.14. ~ 3. 6. / 20일 간) 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자치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치회관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대상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.

O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.

- 안 별표2 단서 조항에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활성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
○ 검토결과,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회관 운영에 있어서 별표로 정한 기준과 범위 내에서 변화하는 사회 여건을 반영하여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, 자치회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,
-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8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법적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.

참 고 자 료

1 지방자치법

- **제8조(사무처리의 기본원칙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.
 -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.

2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8조(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)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■ 지방자치법 시행령 [별표 1]

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(제8조 관련)

구 분	시 ·도 사 무	시·군·자 치 구 사 무
1. 지방자치단체	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	시·도와 시·군 및 자치구에 각각 공
의 구역·조직 및	통된다.	
행정관리 등에		
관한 사무		
2. 주민의 복지 증		
진에 관한 사무		
타. 읍·면·동사	읍·면·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	읍·면·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
무소의 주민	터 설치·운영 지원	치·운영
자치센터 설		
치·운영에 관		
한 사무		

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

- 제10조(사용료 등) ① 자치회관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, 이용자로부터 사용료, 수강료 등(이하 "사용료 등"이라 한다)을 징수할 수 있다.
- ② 제1항 중 "사용료"는 자치회관의 시설·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 서 동장이 징수하며, "수강료"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 회에서 징수한다.
-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구청장이 별표1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"사용료"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, "수강료"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.
-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
- ⑤ 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고,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 2로 정하며, 감면자에 대한 증빙서류 등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.
- ⑥ 제2항에 따라서 위원회가 징수한 "수강료"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 장과 협의하여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, 그 수입·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이내에 공고·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- ⑦ 동장은 "사용료"의 징수·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, 위원회는 "수강료"의 징수·관리·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, "수강료"의 징수·관리·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.

제11조(0)용 등) ① 주민은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.

②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- ③ 주민은 제10조 규정에 따른 <u>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</u>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.
- ④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 다.
- ⑤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시설·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.